

■ Legal Update ■

2016년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제한리스트(네거티브리스트) 개정

I.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 발효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2월 제10차 경제활성화 패키지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제한리스트(Negative List, 이하 "네거티브리스트")를 개정하여 일부 업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제한을 완화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고, 그간 약 4개월간의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16년 5월 18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제한에 관한 대통령령 2016년 제44호(이하 "대통령령 2016년 44호") 및 이에 부속된 네거티브리스트(이하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를 공표하였습니다.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에 따르면, 45개 업종에 걸쳐 외국인 투자가 전면 개방되어 외국인 투자지분율의 제한이 없어지거나 일정한 조건(예를 들어 특수 인허가의 취득 또는 인도네시아 조합 또는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전제로 하여 외국인 투자가 100%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83개의 업종에 걸쳐 행정 부처로부터의 추천서 취득 요건이 면제되었으며 65개의 업종에 걸쳐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의 전체 내용은 [\[첨부 1.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 (인도네시아어 원문), [\[첨부 2.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영어 번역문)를,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100%까지 허용된 업종은 [\[첨부 3. 외국인 투자가 100% 허용된 주요 업종\]](#)(한글본)을, 그리고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허용한도가 완화된 업종은 [\[첨부 4. 외국인 투자제한이 완화된 주요 업종\]](#)(한글본)을 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이번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투자한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주요 업종에 대한 개요를 제공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매업 기타 유통업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는 면적 400~2,000m²의 백화점 운영업 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을 최대 67%까지 허용하였습니다(참고로, 백화점 운영을 위해 무역 부로부터 백화점 운영업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쇼핑몰 내에서만 백화점 운영이 가능하다는 등의 제한이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창고업 및 일반 총판업의 경우 종래 100%까지 허용되던 외국인 투자지분이 직전 2014년 버전 네거티브리스트에서 33%로 대폭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다시 67%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냉동 창고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100%까지 확대되었고, 총판업의 경우에도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는 1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이상과 같이 총판업의 경우 생산과 연계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에 차이를 두고 있으나, 생산과의 연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불분명한바, 하나의 법인을 통한 총판업과 생산업의 겸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겸업이 불가능하더라도 생산법인을 계열사로 둔 총판법인이 있을 경우 그러한 총판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100%까지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소규모 전자상거래 중개서비스업(투자금이 IDR 1,000억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2014년 버전 네거티브리스트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외국인 투자지분을 최대 49%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해석이 중요한바, 투자금이 IDR 1,000억 이상인 경우 외국인 투자한도가 철폐되어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과의 면담, 서면 유권해석 질의 등을 통한 재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Market Place on a Platform Basis)와 같은 전자상거래업에 대한 투자가 대략 한화 기준 87억 원(2016년 6월 7일 기준)을 초과할 경우 100%까지 외국인 투자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의 전자상거래업은 소매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거티브리스트 상으로도 정보통신

업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본 뉴스레터에서는 편의상 소매업 기타 유통업 관련 업종과 연관지어 설명 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우편 주문, 인터넷 주문과 같은 직거래 소매업의 경우 종래 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로컬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전제로, 식음료, 담배, 의약품, 실험실 도구, 섬유, 의류, 신발, 개인 용품, 주방 및 가정용품 등 제한된 품목을 판매하는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100%까지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해석상 앞에 열거된 품목 이외의 상품에 대한 직거래 소매업은 파트너십 형성 없이도 외국인 투자가 100%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카탈로그, 광고, 전화,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기타 대중매체를 통하여 상품을 선택하여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다고 해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이외의 주문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위 홈쇼핑 사업, 인터넷 쇼핑몰 사업 방식을 통해 위와 같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로컬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전제로, 그렇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직접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전까지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되었던 등을 고려하여, 위에서 설명한 각 이슈에 대해 이론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홈쇼핑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가 어디까지인지, 로컬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의 의미, 그리고 허용되는 품목의 명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추가 법률검토 및 투자조정청을 통한 확인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 영화 관련 업종(영화 제작 및 공급, 영화관 운영업)

영화의 제작 및 공급, 영화관 운영업 등 영화 사업 전반에 대해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전면 개방되어 외국인은 영화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지분을 100%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다만, 영화 사업 전체를 하나의 법인을 통해 당연히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겸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레스토랑, 바(Bar), 카페 운영업

2014년 버전 네거티브리스트에서는 레스토랑 운영업에 대해 최대 51%까지, 바(Bar), 카페의 경우 최대 49%까지 외국인 투자가 각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00%까지 허용되었습니다.

■ 스포츠 시설 운영업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스포츠 시설 운영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 상당수 스포츠 시설 운영업의 경우 2014년 버전 네거티브리스트에서는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최대 49%로 제한되었으나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외국인 투자가 100% 가능한 업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당구장, 볼링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100%까지 확대되지 않았으며 67%로 제한되었습니다. 개별 업종에 대한 투자제한 비율 파악을 위해 네거티브리스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 금융서비스업

2016 개정 네거티브리스트에서는 투자 파이낸싱(Investment Financing), 운전 자본 파이낸싱(Working Capital Financing), 다목적 파이낸싱(Multi-purpose Financing) 사업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을 최대 85%까지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타 법령 개정(OJK 규정 제2014년 제28호)을 통해 이뤄진 멀티파이낸스 사업(한국의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유사함) 관련 외국인 투자 제한 사항을 네거티브리스트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퇴직) 연금사업(Pension Fund Business)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사항이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에서는 삭제되어 이제 외국인 투자가 100%까지 가능한 업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건설업

고속도로 운영업 및 무해(Non-hazardous) 폐기물 처리업은 기존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외국인 투자지분이 95%까지 허용되었으나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삭제되어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가 100%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업과 관련하여 새로 추가된 영역은 건설서비스업으로, 선진화된 기술이 필요하거나, 고 위험 공사이거나 또는 공사 규모가 IDR 50,000,000,000 이상인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건설서비스업 내지 건설 컨설팅업은 ASEAN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70%까지, 그 이외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67%까지 투자가 허용되었습니다.

■ 운송업

기존 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되었던 육상 여객 운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이번 개정을 통해 49%까지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공 운송 지원 업, 공항 관련 서비스업, 운송 지원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종래 49%까지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67%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광물·에너지업

아래의 업종의 경우 2014년 버전 네거티브리스트에서 포함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 100% 허용된 것인지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한도가 49%로 설정되었습니다.

- 10MW 이하의 지열 발전소 개발 및 운영업
- 고전압/고전류 전력 시설 공사업

■ 정보통신 관련 업종

정보통신 관련 업종 중 콘텐츠 서비스업(통화연결음 서비스 등), 콜센터 및 기타 부가 통화서비스업,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사업, 공공 인터넷 전화 사업, 인터넷 연결 사업(네트워크 연결) 및 멀티서비스 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가 기존 49%에서 67%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종래 SNS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판매 및 운영 등(예: 카카오톡, 라인 등)은 실무상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Internet Service Provider)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기존 49%에서 67%로 투자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다만, 종래의 실무례는 기존 네거티브리스트 하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변경된 네거티브리스트 하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유선 전기통신(Wired Telecommunication) 서비스업, 무선/위성 전기통신 사업은 외국인 투자지분의 허용한도가 기존 65%에서 67%로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 Crumb rubber 관련 사업

2014년 버전 네거티브리스트 상으로는 Crumb rubber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에 따라 외국인이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습니다. 다만, 일정 비율(최소 20%) 이상의 자체 생산 농장(Plantation)을 보유하고 나아가 기존 팜 플랜테이션(Palm Plantation)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플라σμα 생산 방식 및 지역민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등으로부터 별도의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제약이 설정되었습니다.

■ 보건 관련 업종

보건 관련 업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제한의 대폭적인 완화를 약속하였던

업종입니다.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가 발표된 후, 투자제한 완화의 정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존에 제한되어 있던 다수의 보건 업종에서 투자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만한 업종은 의료기기 사업, 세포 은행 및 연구, 클리닉 운영업, 병원 운영 컨설팅업 등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lass A의 의료기기 사업:** 외국인 투자가 최대 33%까지 허용됩니다(단, 인도네시아 보건부로부터 별도 인허가 취득이 필요함). 참고로, 의료장비는 그 기술 등 수준에 따라 Class A로부터 아래 설명하는 Class B, C, D까지 구분됩니다(Class D가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수준의 의료장비를 의미합니다).
- **Class B, C, D의 의료기기 사업:** 외국인 투자가 최대 100%까지 허용됩니다(단, 보건부로부터 별도 인허가 취득이 필요함). 세부적으로, Class B는 수술마스크, 수술장갑, 수술용 모니터 등을 포함하며 Class C는 X-ray, 콘택트렌즈, 옥시미터 등을 포함하며 Class D는 MRI 검진장비, CT Scan 장비 등 정밀한 의료검사를 위한 기기들을 포함합니다.
- **세포 은행(Cell Bank) 및 실험연구 사업:** 종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최대 100%까지 허용되었습니다(단, 보건부로부터 이에 대한 별도 인허가 취득이 필요함)
- **클리닉 운영업:** ASEAN 국가 출신의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최대 70%까지, 그 이외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67%까지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습니다.
- **의료 지원 서비스업(의료장비 렌탈 등), 건강검진업:** 이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100%까지 허용되었습니다.
- **병원 운영에 대한 컨설팅 또는 병원 위탁운영업:** 이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종래는 67%까지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100%까지 허용되었습니다.

II. 간접 투자(Portfolio Investment)

외국인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취득을 통한 간접 투자를 하는 경우 더 이상 네거티브리스트에 따른 투자제한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통령령 2016년 44호 제8조 제1항). 이는 인도네시아 투자법 Law No.25 of 2007(인도네시아 투자법) 제2조가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직접적인 투자에 적용되며 금융시장에서의 주식 취득 등을 통한 간접 투자 또는 포트폴리오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러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가 항상 네거티브리스트의 적용 예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 및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청(OJK) 및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행정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외국인 투자 보호 규정(Grandfather Clause)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의 본문인 대통령령 2016년 44호는 경과 규정(Transition Provision) 내지 소위 'Grandfather Clause'에 해당되는바,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rticle 13

The provis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Capital Investment activities in Business Fields regulated hereunder shall not be applicable to Capital Investment in certain business fields that have been approved prior to the promulgation of this Presidential Regulation, as set forth in the Capital Investment licenses and/or business license of the company, unless where such provisions are more advantageous for the relevant Capital Investment.

위 규정에 따라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에 따른 투자금지 또는 투자제한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투자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투자제한이 완화된 경우에는 소급효가 미칠 수 있으므로, 기존 투자법인의 주식 지배 구조를 외국인에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위 Grandfather 규정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당초 투자승인서에 투자승인을 받은 한도로 제한되므로, 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초기 투자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투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전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ASEAN 회원국 출신 투자자에 대한 혜택

종래 아세안 회원국 출신 투자자에 대해 일부 업종의 경우 타 국가 출신 투자자에 비해 투자한도를 완화하는 등 일부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이번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를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ASEAN 회원국 출신 투자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X)의 대주주가 ASEAN 회원국이 아닌 제3국가의 법인(Y) 또는 개인(Z)인 경우 X를 ASEAN 회원국 출신 투자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투자법령은 명시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응 ASEAN 회원국 출신 투자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컨대 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 X가 지주회사로서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Y가 인도네시아와 외교적 관계가 단절된 국가의 법인인 경우에는 투자조정청이 갑자기 기존 실무 입장을 변경하여 ASEAN 회원국 출신 투자자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규정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 공표 이전에 이미 ASEAN 회원국 출신 투자자로 인정되어 투자승인을 득한 경우까지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V.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의 시사점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는 다양한 업종에 걸쳐 외국인 투자를 전면 개방하거나 투자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한층 촉진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이번 개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2014년 버전 네거티브리스트에 비하여 상당히 광범위한 업종에 걸쳐 투자 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014년 버전 네거티브리스트에 비하여 업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투자제한 지분율 및 제한 사항을 각 업종마다 병기하여 네거티브리스트의 해석이 보다 명확하고 용이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를 통해 투자가 완화된 업종에 대한 한국 투자자들의 보다 활발한 투자가 기대됩니다.

본 뉴스레터는 최근 발표된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에 대한 한국 투자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첨부 법령 자료 등에 대한 번역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의 개정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실무 태도 및 해석과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 차원에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안전한 투자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 법률검토, 투자조정청과의 사전 협의, 서면 유권해석 질의 등 사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점을 고려한 투자 활동을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권용숙 파트너변호사/인도네시아 담당

- Email: yskwon@jipyong.com
- Tel: +82-2-6200-0981/+62-21-515-0622
- Cell: +62-813-8068-4007

최유진 변호사/인도네시아 담당

- Email: yjchoi@jipyong.com
- Tel: +62-21-515-0622

* 본 뉴스레터에 링크 방식으로 첨부된 네거티브리스트 원문 기타 법령 및 분석자료를 다운로드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실 경우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별도 이메일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